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

1. 편의제공 대상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응시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
 - －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－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

2.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 안내

- 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유형·정도, 편의제공 신청 사항 등을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함
 - － 면접심사 응시 대상이 되면 추가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류 등을 제출, 이후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(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SMS 등 연락)
- ※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외 의사소견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3.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- ‘(참고)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증빙서류’를 통해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필요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
 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(증빙서류 제출 시 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-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
- 편의제공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☎ 02-3275-2581로 문의

◆ [참고] 장애유형별 면접심사 편의제공 기준 및 증빙 서류

○ 면접심사
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제공 내용
지체 장애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휠체어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 장애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
시각 장애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청각 장애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지원 ▶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▶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▶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·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

- 반드시 ‘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사항’을 숙지하신 후에 신청서 작성하여
입사지원서와 함께 송부 바랍니다.

1. 인적사항

지원분야	성명	연락처 (휴대전화)	장애유형(정도)

2. 편의제공 신청 내용

- ‘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 서류’를 참고하여,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
지원 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

편의제공 전형	신 청 (☑ 표시)	받고자하는 편의	편의제공 필요성(구체적으로 기재)
면접심사	☐		